

107 한국관광공사 정관

[1962.6.5 설립위원회]

주무부서 :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 개정 >

1964. 6.29 규정 제 42호	1995. 5.23 규정 제 747호
1966. 5.16 규정 제 86호	1995.11.20 규정 제 757호
1967. 4. 1 규정 제110호	1997. 8.14 규정 제 783호
1967. 7.11 규정 제125호	1997.11.29 규정 제 790호
1968. 3. 2 규정 제142호	1998. 6. 1 규정 제 804호
1969. 3.13 규정 제167호	1999. 2.26 규정 제 822호
1969. 7.10 규정 제178호	2003.11. 4 규정 제 933호
1969. 8.21 규정 제182호	2007. 5.31 규정 제1049호
1970. 3.11 규정 제198호	2007.12. 5 규정 제1060호
1971. 7.20 규정 제224호	2008 .4 2. 규정 제1069호
1971.10.20 규정 제228호	2009. 8.11 규정 제1096호
1973. 2.20 규정 제272호	2010. 5. 3 규정 제1112호
1975. 5.28 규정 제287호	2011. 1.20 규정 제1121호
1976. 1.13 규정 제313호	2015. 1. 8 규정 제1230호
1983. 1. 6 규정 제432호	
1984. 5.29 규정 제489호	
1987. 3.25 규정 제573호	
1988. 3.14 규정 제608호	
1989. 1.26 규정 제616호	
1989. 3.13 규정 제623호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Tourism Organization"(약칭 K.T.O)라 표시한다. <개정 2007.5.31/ 2007.12.5>

제2조(목적) 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1/ 2009.8.11>

제3조(사무소)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강원도 원주시에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8.11/ 2015.1.8>

제4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11>

제6조(광고방법) 공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한다. <개정 2007.12.5>

제6조의2(경영공시) 공사의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31>

제2장 주식과 주주

제7조(주식과 주권)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및 100,000주권 6종으로 한다.

제8조(주금의 납입)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에 대한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11>

제9조(신주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
3. 신주의 납입 기일과 인수의 방법 (정부 소유주식 이외의 경우)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신주 인수권자에 대하여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의개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공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서에 의한 양도인의 경우에는 주권
2. 백지위임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백지위임장과 주권
3.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한 서류와 주권

제11조(등록질) 주식에 대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과 그 말소를 청구하거나,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그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공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권의 상실로 인한 경우에는 재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
2. 주권의 오손으로 인한 경우에는 주권. 다만, 진위 불명인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한다.
3. 주권의 분합을 위한 경우에는 주권

제13조(수수료)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경우에는 공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4조(인감신고 등)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와 인감을 공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명부 기재정지) ① 공사는 매 결산기의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날 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고 임시로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소집) ① 공사의 정기주주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소집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1.1.20>

② 주주총회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의결) 주주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보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2]

제18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장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그 소유주식 1주당 1개로 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공사의 타주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법인의 주주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는, 그 결과 개요와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공사에 보관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2조(임원) ①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③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은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7.5.31/ 2009.8.11>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7.5.31/ 2009.8.11/ 2010.5.3>

③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7.5.31/ 2009.8.11>

- 제23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사장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임원추천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31]

- 제23조의3(임원의 책임)** ①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9조, 제400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5.31>
- ② 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5.31>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4>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개정 2007.5.31>
-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감사 기준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개정 2007.5.31/ 2009.8.11>

- 제2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공사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07.5.31>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5.31>

-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7.5.31>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7.5.31>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07.5.31>

제2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9.8.11>

제29조(감사의 공사대표) 공사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의 소에 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0조(임직원의 신분)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5.31>

제31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32조(상임이사) ① 공사에 사장 외에 3인의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이사의 업무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삭제 <개정 2007.5.31>

제32조의2(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선임비상임이사) ① 공사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5.31]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신설 2008.4.2 >
② 공사의 임원의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개정 2008.4.2 >
1. 사장: 공사의 경영성과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수준
2. 상임이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개정 2007.5.31>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 및 이사회 개최시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고문의 위촉) ① 공사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조예가 깊은 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제5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예산 및 운영계획 <개정 2007.5.31>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채무 보증 <개정 2007.5.31>
 8. 정관의 변경
 9.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31>
 11. 임원의 보수 <신설 2007.5.31>
 12.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07.5.31>
 13.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5.31>
- ② 사장은 전체 이사회에서 결론을 보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위임할 수 있다.
-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공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7.5.31>

제36조(이사회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사장은 상임이사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사장이 제안하는 안건의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회의 회의) ① 이사회회의 회의는 사장이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07.5.31>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5.31>
- ③ 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이사회에서 재심의 처리할 수 있다.
- ④ 사장은 원칙적으로 전 임원에게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계획을 통지하고,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송부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31>
- ⑤ 사장은 제4항에 의거한 이사회 안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07.5.31/ 개정 2009.8.11>
- ⑥ 그 밖의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07.5.31>

제37조의2(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31/ 개정 2009.8.11>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5.31>

제38조(긴급사항 처리)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서면결의)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않는 안건이나, 간이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는 경과개요와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공사에 보관하고 그 사본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제41조(사업) 공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9.8.11>

1. 국제관광 진흥사업
 -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개정 2007.5.31/ 2009.8.11>
 -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개정 2009.8.11>
2. 국민관광 진흥사업
 - 가. 국민관광의 홍보
 -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개정 2009.8.11>
 -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개정 2009.8.11>
3. 관광자원 개발사업
 - 가. 관광단지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및 처분
 -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개정 2009.8.11>
 - 다. 관광지의 개발
 -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개정 2009.8.11>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가. 법인에 대한 투자사업
 - 나. 재산의 임대사업
 - 다. 물품의 수출·입업
 - 라. 기타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제42조(사업의 위탁경영)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41조의 사업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43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4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5조(예산, 결산 및 회계) 공사의 예산, 결산 및 회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31>

제45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공사는 관광단지의 관리운영에 따르는 회계와 기타 필요한 회계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별도 계리할 수 있다.

제4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9.8.1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개정 2009.8.11>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개정 2009.8.11>
5. 다음 연도로의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제2호에 따라 적립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개정 2009.8.11>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제47조(배당금의 지급) ①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 이익배당 통지를 한 후,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8장 사채

제48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8.11>

제49조(설립비 부담) 법인 등록세를 제외한 당 공사가 부담한 설비비용은 70만원 이내로 한다. 설립을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

서기 1962년 6월 5일
 국제관광공사의 설립위원 박 정 구
 동 송 정 범
 동 정 인 완
 동 김 봉 관

동 옥 조 남
동 최 명 진
동 임 병 주
동 김 병 식
동 신 두 영

부칙 (1964. 6.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6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 8.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6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 3.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7.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0.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2.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5.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1.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6)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집행간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행간부로 임명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집행간부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1987. 3.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14)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14)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 (법률 제5376호, 97.8.28일 공포)에 의거, 1997.11.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6.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제5812호, 1999년 2월 5일 공포)에 의거 199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에 대한 특례) ①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장과 감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최초 임명 당시의 정관에 따른 잔여임기 종료시에 만료된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의 이사는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새로운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집행간부에 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의 집행간부는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의 최초임기)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2년·3년의 비상임이사를 동수로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3의 배수를 제외한 인원이 2인인 때에는 이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와 임기3년의 비상임이사 각 1인의 정원으로 하고 3의 배수를 제외한 인원이 1인인 때에는 임기3년의 비상임이사의 정원으로 한다.

부칙 (2003.11. 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07.1.19일 공포)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78호 '07.3.27일 공포) 제정에 의거 2007. 7 .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최초 임명 당시의 정관에 따른 잔여임기 종료시에 만료된다.

부칙 (2007.12. 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2)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